

안벽용 승강설비 안전



안벽용 승강설비란?

안벽용 승강설비란 건조 중인 선박 구조물 상부로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통로를 말한다. 선체 외판 가장자리에 걸고리형 치구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서비스타워(Service Tower)와 서비스 타워 아래에 연결되어 안벽 등 바닥에 설치되는 승선브릿지로 구성된다.



안벽용 승강설비 설치 전경

- 승강설비 고정 방법
 - 체인을 이용한 고정
- 클램프를 이용한 고정
-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고정





- 주요 위험요인

- 설치작업 중 추락 위험 승강 설비 설치작업 중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위험
- 사용 중 서비스타워 및 승선브릿지 낙하 위험 충격하중이나 누적피로에 의해 걸고리형 지그가 파손되면서 낙하 위험
- 이동 중 미끄러짐으로 인해 전도 및 추락 위험

안전대책

- 설치작업 중 추락 위험방지
 - 설치작업 관련 안전표준작업에 따라 작업토록 관리감독을 실시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서비스타워 및 승선브릿지 낙하 위험방지
 - 치구제작 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제작토록 치구제작, 사용 및 검사 기준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치구류
 등록부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설치 전에 걸고리와 같이 하중을 받는 개소에 대해서는 균열, 벌어짐, 휨과 같은 변형 등 이상 유무를 확인

• 전도 및 추락 예방

- 미끄럼 방지를 위해 각 계단에 미끄럼 방지(Non-Slip) 처리를 함
- 계단 측면에 표준안전난간 설치



[서비스 타워 각부 구조]





재해사례: 안벽용 승강설비 설치 중 걸고리 파손으로 서비스타워 낙하

개요

조선소 내 안벽에서 건조 중인 호선에서 작업자 5명이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호선 승강설비(서비스 타워, 승선 브릿지로 구성)를 설치하던 중 서비스타워와 호선 메인 데크를 연결 지지하고 있던 걸고리가 파단되면서 승선 브릿지 내에서 조립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서비스타워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



발생원인

- 치구 임의 제작사용으로 직각 절단 부위에 노치 발생
- 작업 전 검사 미실시 하중을 받는 치구 등은 정기적으로 균열 등의 결함을 검사하고 작업 전 사전검사도 실행해야 하나 검사를 하지 않았음
- **주 걸고리 파손에 대비한 안전조치 미실시**주 걸고리 파손에 대비하여 체인이나 와이어로프 등으로 보조 걸고리를 설치하여 이중으로 구속시 켜야 하나 실시하지 않았음

예방대책

- 치구제작, 사용 및 검사 절차 마련 치구제작 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제작토록 치구제작. 사용 및 검사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작업 전 검사 철저
 하중을 받는 치구 등은 정기적으로 균열 등의 결함을 검사하고 작업 전 사전검사 실시
- **주 걸고리외 이중안전장치 설치** 주 걸고리 파손에 대비하여 체인이나 와이어로프 등으로 보조 걸고리를 설치하여 이중으로 고정





안전수칙

- 크레인 작업자. 승강설비 작업자(서비스타워 및 승선브릿지) 사이에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다.
- 주 걸고리, 보조 걸고리 등 하중을 받는 치구 등에 대하여 균열 등 이상 유무를 작업 전에 확인 한다.
- 설치작업 중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키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 작업자가 탈 별도의 장비를 준비한다.
- 고소작업 중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한다.
- 서비스타워가 안전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승선브릿지를 연결토록 관리 감독한다.
- 상호 연락 및 신호에 주의하면서 작업한다.
- 주 걸고리외에 보조 걸고리를 설치하여 낙하에 대비한다.
- 승선브릿지의 안전난간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 계단의 답단에는 미끄럼 방지(Non-Slip) 처리를 하여 승강 중 전도·추락재해를 예방한다.
- 크레인 줄걸이 용구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 걸고리가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관련 범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63조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 제164조 (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제168조 (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